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 업무협약서

(구매기업용)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_____ (이하 “구매기업”이라 함)은 상호협력하여 구매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은행의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 결제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기업 상호지원 업무협약(이하 “이 협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이 협약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제 1조 (목적)

이 협약은 구매기업과 물품 등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협력기업의 원활한 납품을 위한 생산자금 등의 금융지원을 위하여, 은행이 구매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하여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을 지원함에 있어 은행과 구매기업간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매기업”이라 함은 경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협력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협력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은행과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이하 “미래대출”이라 합니다) 여신약정을 체결한 채무자를 말합니다.
- “발주서”라 함은 물품 등의 품목, 발주금액, 납품기한, 발주서만기일, 대금지급확약비용 등을 전자적인 방식 또는 기타형식으로 구매기업이 은행에게 송부하는 구매기업과 협력기업 간의 물품공급계약서, 물품구입주문서, 구매승인서 등을 말합니다.
- “대금지급확약비용”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전송하는 발주서에 대하여 협력기업의 납품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구매기업이 반드시 결제하여야 하는 당연변제의무비용을 말합니다.
- “채권확정”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협력기업의 납품으로 발생하는 물품 등의 대금지급채무를 외상매출채권 발행, 지급승인명세의 전송 등 구매자료를 은행에 전송하여 외상매출채권을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을 “확정채권”이라 합니다.
- “납품기한”이라 함은 협력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 해야하는 기한을 말합니다.
- “발주서만기일”이라 함은 발주서상의 대금지급예정일을 말하며, 미래대출 취급 시 대출만기일로 지정되나, 채권확정 시 지정되는 대금지급일로 대출만기일이 변경됩니다.
- “대금지급일”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협력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약정한 결제계좌에 구매대금을 입금하여야 하는 일자로서, 매출채권의 만기일을 말합니다.
- “매출채권”이라 함은 협력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함으로써 취득하는 외상매출채권과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 체결을 통해 취득하는 발주서 등 미래채권을 말합니다.
- “기업인터넷뱅킹”이라 함은 기업뱅킹, CMS등을 말합니다.
- “전자적인 방식”이라 함은 발주서 전송, 채권확정, 외상매출채권 발행, 지급승인명세 전송 등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기업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제 3조(발주서에 대한 대금의 지급)

- ① 구매기업이 이 협약에 따라 은행에게 통보한 발주서에 대하여는 구매기업 및 협력기업 간의 법률관계와 무관하게, 구매기업이 매출채권의 변제 의무를 부담하는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며, 그 명세에 기재된 대금지급일에 은행의 영업시간 이내에 아래와 같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채권확정된 대금을 입금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하나은행에 개설한 본인명의로의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

예금주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비고
			법인의 본지사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금주 사업자번호 기재

- 은행은 입금된 대금을 별도의 청구서 없이 출금하여 협력기업에 대한 미래대출 원금과 이자를 우선 상환하기로 합니다.
- 미래대출 상환후 남은 매출채권 대금 및 미래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매출채권 대금은 전항의 방법에 따라 협력기업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
-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또는 지급승인 명세의 전송 등의 방법으로 채권확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약정한 해당 확정채권의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니다.



⑤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구매기업의 사정으로 통장예금자동대출 계좌나 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 영업시간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중대출이 발생하더라도 대출취급 및 이자징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 4조(대상거래처의 선정)

이 협약에 의하여 구매기업이 발주서를 전송하는 대상은 구매기업이 추천하거나, 구매기업과 물품 등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협력기업 중에서 은행과 미래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상생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생일반구매론 등 확정채권과 관련한 별도 약정을 체결한 협력기업으로 합니다.

제 5조(신용공여기간)

이 협약에서 정하는 신용공여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구 분	신용공여기간
대금지급일	발주일(또는 통보일)로부터 최장 1년 이내에서 발주서 전송 시 지정하는 발주서 만기일로 하며, 외상매출채권 발행 또는 지급승인명세 전송 등 채권확정 거래 시 최종 확정하기로 합니다.
납품기한	발주일(또는 통보일)로부터 최장 180일 이내에서 발주서 전송 시 정하기로 합니다.
채권확정기한	납품기한 이내에서 제11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채권확정하기로 합니다.

제 6조(대금지급확약비율)

① 이 협약에 의한 대금지급확약비율은 아래와 같이 정하기로 합니다.(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관련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

구 분	대금지급확약비율
<input type="checkbox"/> 모든 협력기업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 적용	()%
<input type="checkbox"/> 발주서 전송 시 발주서별 비율 적용	발주서 전송 시 발주서에 명시하기로 합니다

- ② 모든 협력기업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도 발주서별로 대금지급확약비율의 입력이 가능하며, 이 경우 모든 협력기업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③ 발주서 전송 시 발주서별 대금지급확약비율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 발주서 전송 시 대금지급확약비율을 누락한 경우 발주서 전송이 제한됩니다.
- ④ 발주서 상 대금지급확약비율 해당 금액(이하 “지급확약금액”이라 함)의 최대 80% 범위내에서 협력기업에 대한 미래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제 7조(협력기업에 대한 미래대출의 총 한도 및 변제 의무)

① 협력기업에 대한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의 총 대출한도와 대출이자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로 합니다.

협력기업에 대한 총 한도	연계하여 취급하는 다음 각 대출의 형태별로 약정된 대출한도 또는 여신(한도)금액 범위 내 1. 상생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2. 상생일반구매론
이자율 등	위에서 나열된 각 연계 대출에서 약정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함
지연배상금률	위에서 나열된 각 연계 대출에서 약정한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기로 함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변제방법	개별 매출채권의 만기일에 변제하기로 합니다.

※ 은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결제계좌 입금 분은 당일 중 변제처리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구매기업은 제1항에 의해 미래대출이 취급된 발주서에 대해 지급확약금액을 한도로 변제 의무를 지며, 대금지급일에 변제를 지체 한 때에는 변제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 및 방법으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변제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지급확약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구매기업이 변제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 ③ 협력기업에게 취급하는 대출금액의 총 잔액은 제1항에서 정한 “협력기업에 대한 총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④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 상거래와 무관한 발주서에 대하여 미래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는, 구매기업은 그 대금지급일에도 불구하고 즉시 변제하여야 하며,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및 방법으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⑤ 구매기업이 은행에게 통보한 발주서를 기초로 하여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미래대출을 취급한 이후에는, 구매기업은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금지급일에 은행에게 그 대금을 제3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
 - 1. 협력기업과의 납품계약 취소, 변경, 계약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매출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경우
 - 3. 협력기업으로부터 제3자에게 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제8조(매출채권의 양도 및 양도승낙)

- ① 은행이 협력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은행은 협력기업으로 하여금 그 양도사실을 지체없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하도록 하거나, 협력기업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직접 그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대해 구매기업은 아래 명시된 사유 등이 없는 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1. 협력기업이 당시까지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구매기업이 협력기업에 대하여 그 납품대금을 변제하는 등 납품대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 3. 구매기업이 협력기업에 대하여 반대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통보를 할 때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 4. 협력기업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가 있거나 협력기업이 제3자에게 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통지한 경우
 - 5. 전산조작오류 등 매출채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 6. 기타 구매기업이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채무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구매기업은 협력기업이나 은행으로부터 매출채권 양도통지를 받은 경우 필요시 “매출채권양도승낙서”를 은행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 9조(양도받은 채권의 관리 및 통지)

구매기업은 은행이 양도받은 협력기업의 매출채권을 성실히 관리하여 은행의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금 채권보전에 적극 협조하고, 협력기업의 채권자가 위 매출채권을 (가)압류하였거나 협력기업으로부터 제3자에게 위 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등 은행이 협력기업으로부터 양도받은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10조(발주서의 전승, 취소 및 변경)

- ① 구매기업이 은행에게 발주서를 전산으로 통보한 경우, 대금지급일 직전 은행영업일까지 구매기업은 협력기업과의 납품계약의 하자, 전산조작오류, 기타 사유를 이유로 은행에게 발주서의 취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 다만, **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산 통보를 받고 그에 기초하여 협력기업에게 미래대출을 실행한 후에는 발주서의 취소나 변경이 제한됩니다.**
- ② 발주서의 전승, 취소 및 변경은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 1. 구매기업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물품 등의 구매 용도로만 발주서를 전승하여야 합니다.
 - 2. 발주서의 항목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3. 발주금액은 최소 일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4. 발주서의 납품기한, 발주서만기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로 합니다.
 - 5. 구매기업은 기업인터넷뱅킹, 팜뱅킹서비스 등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주서를 전승,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6.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 관리점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주명세등록신청서” 및 해당 명세를 파일로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7. 구매기업이 발주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협력기업의 동의를 득하거나 정당하게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취소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8.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과 같이 상거래와 무관한 발주서 전승시, 은행은 강제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9. 발주서의 협력기업은 변경할 수 없으며, 채권확정 전에 한하여 발주금액, 납품기한, 발주서만기일, 대금지급확약비율 등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단, 협력기업이 발주금액에 대하여 일부라도 미래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이미 취급한 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서만기일을 제외한 발주금액, 납품기한, 대금지급확약비율 등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 10. 은행은 구매기업이 전승한 발주서를 협력기업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합니다.



③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서 전송이 제한됩니다.

1. 구매기업 또는 협력기업이 은행의 내규 등에서 정한 여신의 비적격자인 경우
2. 구매기업 또는 협력기업이 이 여신 또는 은행과 약정한 타여신이 연체중인 경우
3. 구매기업 또는 협력기업에 대하여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및 부도정보(관련인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관련인정보, 공공정보가 등록된 경우
4. 구매기업 또는 협력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은행협약, 기타 유사한 협약 등에 근거하여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5. 구매기업 또는 협력기업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6. 허위매출, 현금용통성거래 등 기업간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구매 용도 외의 발주서를 전송하는 등, 이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7. 이 협약 제13조(한도 감액, 정지)에 의하여 구매기업 또는 협력기업의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
8. 협력기업에 대하여 거래 제한이 등록된 경우
9. 은행의 전산장애, 인터넷상의 장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 11조(채권확정)

- ① 구매기업은 협력기업의 납품 완료 즉시 매출채권을 확정하여 발주서의 납품기한까지 은행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또는 지급승인명세의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미 전송한 발주서의 지급확약금액 이상으로 채권확정하여야 하며, 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서 대금지급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 ③ 협력기업의 미래대출 잔액이 있을 경우, 협력기업과 별도 약정한 확정채권 거래 약정에 따라 대출이나 선입금을 실행하여 미래대출의 개별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 ④ 구매기업이 납품기한일까지 매출채권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기업이 이미 전송한 발주서에 따라 지급확약금액을 채권금액으로 하고 발주서만기일을 대금지급일로 하여 매출채권이 자동확정되며, 대금지급일에 미래대출 및 채권대금을 결제하기로 합니다.

제 12조(대출취급 및 제한)

- ① 은행은 제10조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받은 발주서를 기초로 하여, 발주서등록일부터 납품기한 직전 은행영업일까지 협력기업에게 대출을 취급하기로 합니다.
- ② 협력기업의 대출신청은 은행과 협력기업간의 약정한도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인터넷 또는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발주서별로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대출 받기로 합니다.
- ③ 협력기업이 신용정보관리규약 상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거나 기타 은행의 내규상 여신의 비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전산상 장애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3조(한도 감액, 정지)

- 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구매기업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제7조에서 정한 “협력기업에 대한 총 한도” 및 이 협약의 유효기간에 불구하고 한도액을 줄이거나 협력기업의 대출취급 금지, 매출채권거래 등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 가. 국가 또는 은행의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여 조달금리 폭등 등의 사유로 은행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 나. 외환유동성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 은행의 지급여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은행에 유동성조절대출 등을 요청한 경우
 - 라.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구매기업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 가. 외부신용평가기관 또는 은행 신용평가에 따른 신용등급이 현저히 하락(2단계 이상 등)한 경우
 - 나.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결과 감사의견이 “부적절/의견거절”로 제시된 경우
 - 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때
 - 라.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 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 14조(이용시간)

- ① 은행은 구매기업 및 협력기업의 이용시간을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 본점 및 영업점 또는 은행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15조(협약서의 효력)

- ①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그 유효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20____년____월____일까지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양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에 의하여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해 이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구매기업이 이 협약에 따라 통지한 발주서에 대하여는 해당 발주서의 실제 지급이 완료되는 날까지 이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④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상충되는 사항은 이 협약이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순서로 합니다.
- ⑤ 은행과 구매기업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협약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협약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 16조(협약의 체결 및 변경)

- ① 이 협약과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③ 이 협약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거나 이 협약을 보충하기 위하여 은행, 구매기업, 협력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 사이에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④ 필요한 경우 은행과 구매기업은 협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7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협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8조(기타 특약사항)

	(서명날인)
--	--------

이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은행과 구매기업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20____년____월____일

(은행)

(구매기업)

주식회사 하나은행 (인) 회 사 명 : _____ (인)
주 소 : _____ 주 소 : _____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 이 협약을 체결함.	구매기업	(인)
--	------	-----

